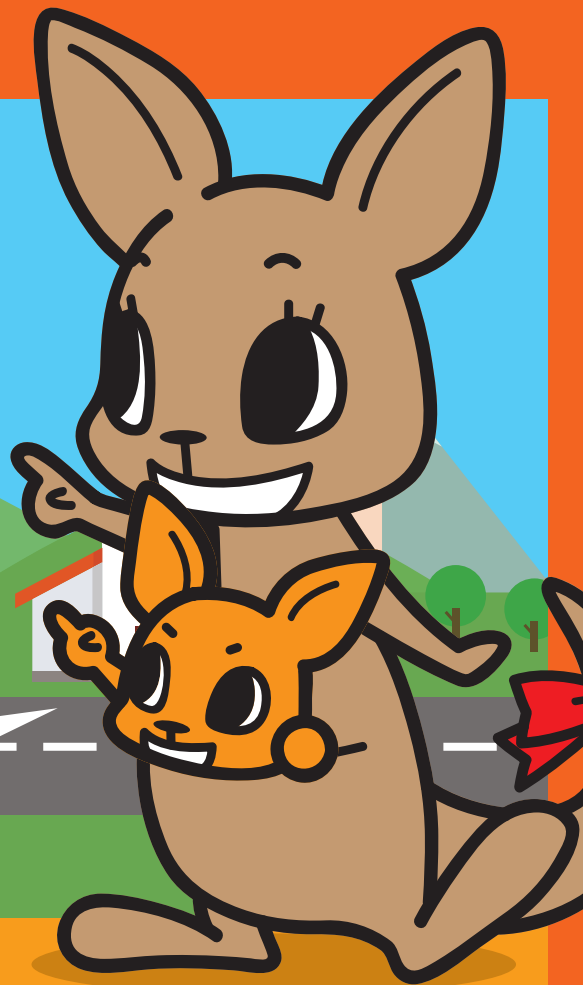


니가타현 교통 재해 공제

연회비는 1인당
500엔

위로금 금액은
30,000엔 부터
(실제 치료 7일 이상부터)
최고 금액은
1,500,000엔
(사망 시)

이 기금은 제도의 구성원인 니가타 현민들에 의해 지원되는 공제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교통사고를 당한 회원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니가타현 내 모든 시정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자격

니가타현에 거주하는 외국인(외국 국적자)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주민기본대장법에 규정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회비는 단 500엔

회비는 1인당 매년 500엔입니다. 기간 도중에 회원 가입한 경우도 회비는 동일합니다.

공제 유효기간

매년 4월1일 ~ 다음 해 3월31일

★연 중간에 가입한 경우, 기간은 가입 다음 날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기간** ●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관한 문의는 거주하시는 시청, 정촌사무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가타현 내 시정촌으로 구성된 니가타현 시정촌 종합사무조합

위로금

위로금은 실제 치료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500엔

의 저렴한 연회비로

모두가 안심

위로금 청구기간

위로금에 대한 청구는
사고 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급	상해 정도	금액
1	사망	1,500,000 엔
2	신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의 등급별 구분 1급의 장애 또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애로 항상 타인의 보살핌을 요하는 자	1,500,000 엔
3	신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호의 등급별 구분 2급의 장애 또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애	1,000,000 엔
4	35일 이상 입원을 포함하는 실치료일수 100일 이상의 상해	500,000 엔
5	31일 이상 입원을 포함하는 실치료일수 90일 이상의 상해	450,000 엔
6	27일 이상 입원을 포함하는 실치료일수 80일 이상의 상해	400,000 엔
7	23일 이상 입원을 포함하는 실치료일수 70일 이상의 상해	350,000 엔
8	19일 이상 입원을 포함하는 실치료일수 60일 이상의 상해	300,000 엔
9	15일 이상 입원을 포함하는 실치료일수 50일 이상의 상해	250,000 엔
10	11일 이상 입원을 포함하는 실치료일수 40일 이상의 상해	200,000 엔
11	7일 이상 입원을 포함하는 실치료일수 30일 이상의 상해	150,000 엔
12	3일 이상 입원을 포함하는 실치료일수 20일 이상의 상해	100,000 엔
13	입원 통원의 실치료일수 19일 이상의 상해	70,000 엔
14	입원 통원의 실치료일수 16일 이상의 상해	60,000 엔
15	입원 통원의 실치료일수 13일 이상의 상해	50,000 엔
16	입원 통원의 실치료일수 10일 이상의 상해	40,000 엔
17	입원 통원의 실치료일수 7일 이상의 상해	30,000 엔

※실제 치료 일수란 입원 일수 및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 또는 회원의 유가족이 의도적으로 사고에 관여했거나 회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회원이 무면허 혹은 무자격으로 또는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차량(자전거 포함)을 운전했을 때.(회원이 운전자로 알코올 영향을 하에 있음을 자각하면서 해당 차량에 동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회원이 입은 상해가 어떠한 것이든 자신이 범하는 범죄행위 중에 발생한 경우
- 회원 또는 그 유가족 중 누군가가 부당하게 위로금을 청구하려고 한 경우
- 지진, 홍수를 포함하는 자연재해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교통사고 증명이 없으면 위로금은 제17등급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또는 정촌 사무소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의 범위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종류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노상에서의 충돌, 전도, 접촉으로 인해 신체적 부상(사망도 포함)으로 이어지는 사고
철도열차, 전철, 디젤기관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철도 관련 사고로 인해 회원의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
장애인 휠체어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삼륜차 등)	노상 충돌, 전도, 접촉으로 인해 신체적 부상(사망도 포함)으로 이어지는 사고 ((회원의) 단독 사고인 경우 회원이 신체장애인 수첩을 소지할 때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일본 국내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교통 재해 공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제도입니다!

Q&A

Q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치료 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당연히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작은 부상일지라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시청, 정촌 사무소에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회원의 단독 사고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걷다가 넘어진 경우는 어떤가요?

A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